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68호

나. 제 출 자 : 고성미 의원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도 불리며,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이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안 제9조)

4. 관계법령

가.「평생교육법」

나.「초·중등교육법」 제28조

5. 검토의견

1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느린학습자 지원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보조금의 교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느린학습자”는 학계에서 “경계선지능인”, “저성취아동”, “경도 인지적 손상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서울시 6개 자치구(동대문, 구로, 양천, 노원, 서대문, 서초)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에 따라 “느린학습자”는 통상 지능검사 기준(IQ) 71부터 8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음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2019년 실시한 「느린학습자 기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는 인구의 약 12~14%로 한 학급에 평균 3명, 전국적으로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학업능력은 하위 8% 수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의가 산만하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으로 또래 아동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늘 위축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특성으로 느린학습자는 언어능력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학교적응, 학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가 제정되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느린학습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전문개정 2012. 3. 21.]